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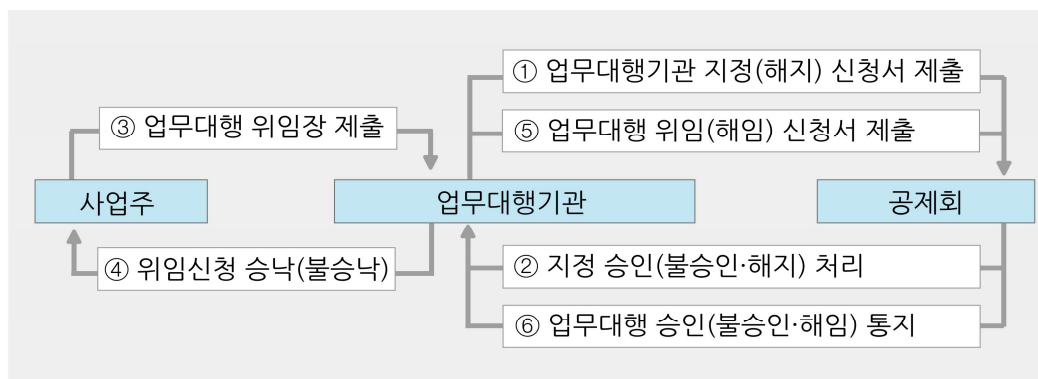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 및 대행기관 지정 안내

1 목적 : 중소기업 사업주 업무부담 경감 및 전자카드 사용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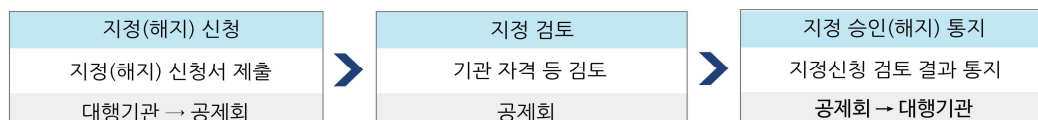
2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 안내

- (서비스 개요) 공제회의 지정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퇴직공제업무를 대행하여 처리
- (업무대행기관 지정 자격)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행정사이거나 4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
- (위임가능 사업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당연가입적용사업장 및 임의가입사업장
- (대행가능 업무범위) 사업주 관리업무 전체
※ 퇴직공제 성립신고, 단말기 설치, 근로내역 신고 등
- (서비스 세부절차)

●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 흐름도



● 업무대행기관 지정(해지) 절차



※ 공제회는 지정(해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대행기관에 '지정신청 검토 결과'를 통지

● 업무대행기관 위임(해지) 절차



※ 세부내용은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 처리기준'에서 정함

- ①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공제회에 “**업무대행 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 ② 공제회는 “업무대행기관 지정신청서” 검토 및 지정 결과 통지
- ③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사업주는 업무대행기관을 선택하여 “퇴직공제 업무대행 위임장” 제출
- ④ 사업주로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위임장”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은 승낙 통지
- ⑤ 업무대행기관은 공제회에 “퇴직공제 업무대행 위임신청서” 제출
- ⑥ 업무대행 위임사실 확인 및 위임 신청결과 통지와 함께 서비스 개시

3 지정 신청방법

- (상시 가능)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eassist@cw.or.kr) 제출

〈 필요 서류 목록 〉

- ①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5페이지 서식 활용]
 - ② 사업자등록증 1부
 - ③ 업무대행기관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사무대행기관)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 이 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 법인설립 허가증·인가증, 민간단체 등록증 등
 - (개인) 각종 자격 확인증* 등
- * 직무개시등록증, 세무사등록증,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 회계사등록증 등

4 지정 후 참여 가능한 사업

- (업무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수임 시 지원금 지급(세부 내용은 포스터 QR코드 참고)
- (우수 업무대행기관 포상) 총 8백만원 / 우수 대행기관 인증마크 제공
- (홍보 지원) 공제회 이벤트(예시: 최초 업무대행서비스 이용 사업주 대상 경품발송) 개최, 기관 별 홍보물 제작(디자인·인쇄) 지원 등
- (교육·간담회) 시스템 실습교육 및 의견 청취 위한 간담회 실시 등

※ 포상·홍보·교육 등 세부절차는 사안별 추가 안내 예정이며,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목적) 법정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도입('98.1.1 시행)
- (운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1일 6,500원) 납부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 퇴직공제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②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③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 ④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 범위

유형	구분	범위
공공 공사	· 국가·지자체 및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 공사 ·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 공사	· 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200호(실)이상

※ 당연가입대상공사의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일에 따라 상이함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도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 연도별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및 공제부금 수납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18	'19	'20	'21	'22	'23
사업장 수	26,764	30,777	45,386	78,597	77,119	86,492
수납액	5,940	6,096	6,226	6,784	8,539	9,564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도입·적용)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20.11.27)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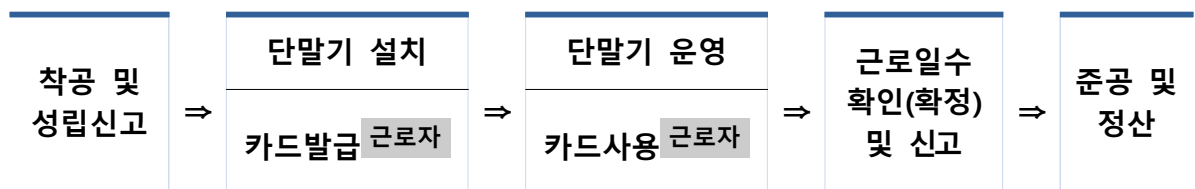
구분	1단계 ('20.11.27~)	2단계 ('22.7.1~)	3단계 ('24.1.1~)
공공	100억 이상	50억 이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100억 이상	

※ '24.1.1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중

- (운영체계) 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현장 출·퇴근 시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여 기록을 남기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내역을 퇴직공제 신고 등에 활용

※ 근로내역 신고 등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을 통해 진행

【주요 업무 처리 절차도】



〈참고〉 퇴직공제 및 전자카드제 가입사업장 주요 현황

- '24.12월 기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은 약 62천개소이며, 이 중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은 약 71%(44천개소)
-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24.1월)로 인한 신규 적용사업장의 약 98%(31천개소)가 중·소규모 공사(50억원 미만)이며, 적용사업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기준: '24.12월 단위: 개소, %)

구분	계	3억 미만	50억 미만	100억 미만	100억 이상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비중)	62,482 (100)	24,020 (38.4)	27,320 (43.7)	4,312 (6.9)	6,830 (10.9)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비중)	44,373 (100)	19,870 (44.8)	15,752 (35.5)	3,143 (7.1)	5,608 (12.6)

